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5859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2. 10. 4.
판 결 선 고	2022. 12.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7. 1. 원고들에게 한 지방세 134,031,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2014. 1.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설립될 당시 위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10,000주 중 원고 A가 3,000주, 원고 B이 1,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B은 2016. 6. 23. D으로부터 C 주식 3,000주를 1주당 5,000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6. 27.까지 D에게 그 대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C의 주주명부에도 원고 B이 D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여 총 4,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 C는 2016. 4. 14. ○○○시 E 외 1필지 지상 집합건물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0. 7.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이 C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C가 보유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취득세 123,236,2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794,840원(가산세 포함) 합계 134,031,0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D은 2020. 11. 11. 원고 B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고 B의 기망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고,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소송(2020가단17344)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원고 B은 2021. 8. 31.까지 D에게 이 사건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C 주식 3,000주를 양도하고,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와 같이 명의개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전소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8. 5. 이의신청을 거쳐 2020. 11. 26.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9.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D이 원고 B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체결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C의 과점주주가 아니다.

2)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원고들은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고, D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D의 간섭 및 관리를 받아야 했기에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도 없었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소유한 C의 주식수를 합하면 7,000주로 위 회사 전체 주식수의 70%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면 처음부터 원고 B이 D의 주식 3,000주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원고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D이 원고 B을 강요하고 협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전소 조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을 유추할 어떠한 단서도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의 청구원인 역시 원고 B이 D을 기망하였다는 것으로 원고들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전소 조정을 통하여 원고 B과 D이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규정의 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으로서, 따라서 과점주주로 된 자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구 지방세법이 정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누1113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C의 주식 중 70%를 소유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원고들의 의사대로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 B이 D에 대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원고들의 의사대로 C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D의 의사에 따라 C가 운영되었다면 원고들이 'C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겠으나, 원고 B이 D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D의 의사에 따라 C가 운영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중략)부터 60일[중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3-26

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군수는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이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과점주주의 주식 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